번호			굴착기를 이용한 인양작업 허용기준
1			제129회 제1교시 2번 · 학습용 답안 예시
			1. 개요
			· 굴착기는 차량계 건설기계로 주된 용도에만 사용함이 원칙임(제204조)
			· 제221조의5(2022. 10. 18. 신설) 요건을 모두 갖춘 굴착기에 한해 화물 인
			양작업 가능
			2. 인양작업 허용 요건(제221조의5제1항)
			·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(훅·걸쇠 등)가 부착되는 등 인양작업이
			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
			·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 사용
			· 달기구에 해지장치 사용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을 것
			3. 인양작업 시 준수사항(제2항)
			·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
			·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 신호
			· 인양물과 근로자의 접촉 우려 장소에 근로자 출입 금지
			· 지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
			· 인양 대상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 이내
			4. 달기구 및 관련 안전조치
			· 달기구는 제163조~제170조 준용: 화물 직접 지지 와이어로프 안전계수 5
			이상, 훅·샤클 3 이상
			· 작업장치 장착·교환 시 안전핀 등 잠금장치 체결·확인(제221조의4)

번호			· 후사경·후방영상표시장치 작동 확인(제221조의2)
1			· 운전자 좌석안전띠 착용(제221조의3)
			※ 공식 정답·채점기준이 아닌 학습용 예시임